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이종욱 · 김민전 · 박덕흠
이성권 · 김성원 · 윤한홍
나경원 · 김위상 · 송언석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도록 하되,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.

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,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.

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(기존의 공동주택 포함)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,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등)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2조제1항 전단에”를 “제12조제1항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공동주택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또는 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

다.

제3조(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공동주택(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)의 관계인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 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 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	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 ① ----- -----제12조제1항에-----

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)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

가. ~ 라. (생략)

<신 설>

② ~ ⑤ (생략)

<신 설>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공동주택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

수 있다.